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류성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6561

발의연월일: 2022. 7. 20.

발 의 자:류성걸・권성동・박수영

박정하 • 배준영 • 성일종

이인선 • 정운천 • 조은희

주호영 · 최승재 의원

(119]

##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

현행법은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15~30% 소득공제하면서 대중교통,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40%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정책적으로 이용을 장려하고 비용부담을 지원하고 있음.

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지속 상회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2022년 하반기(7.1~12.31)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 제율을 40%에서 80%로 대폭 상향하고,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도 각 각 50만원씩 증액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한편 서민·중산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).

#### 법률 제 호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6조의2제2항제2호 중 "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"을 "2 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"2020년 12월 31일"을 "2022년 12월 31일"로, "330만원"을 "350만원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00만원, 2020년 12월 31일"을 "2022년 12월 31일"로, "280만원"을 "300만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2020년 12월 31일"로, 일"을 "2022년 12월 31일"로, "270만원"을 "2022년 12월 31일"로, "280만원"을 "2022년 12월 31일"로, "280만원"을 "250만원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26조의 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126조의2(신용카드 등 사용금 제126조의2(신용카드 등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제) ① (생 액에 대한 소득공제) ① (현행 과 같음) 략)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(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제1호·제2호·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)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 호의 금액(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 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을 더 한 금액으로 하되. 제10항에 따 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. 이 경 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 호,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
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의금액의 합계액(이하 이 항에서 "대중교통이용분"이라 한다) × 100분의 40(2020년 3 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)

- 3. ~ 7. (생략)
- ③ ~ ⑨ (생 략)
- ①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 등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. 다만,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제2항제1호, 제2호 및 제7호의 금액의 합계액(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추가로 합친 금액)중 작거나같은 금액(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

202213 7
<u>2022년 7</u>
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
3. ~ 7. (현행과 같음)
③ ~ ⑨ (현행과 같음)
10
·

한다)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 액에 추가한다.

- 1.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: 연간 3 00만원(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 30만원)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
- 2.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: 연간 250만원(201 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00만원,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280만원)
- 3.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: 연간 200만원(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230만원)

1
<u>2022년 12월 31일</u>
350만원
2
<u>2</u>
022년 12월 31일
<u>300만원</u> -
3
<u>2022년 12월 31</u>
<u>일</u>
250만원-